

V. 언론중재위원회

1. 언론중재위에 대한 조정신청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구술이나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정정보도 등과는 달리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그에 상당하게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2. 기각·조정불성립 결정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직권조정 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 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직권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직권조정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중재 신청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중재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VI. 소송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대한 소송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수 있다. 언론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